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은 확대하여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안 제43조의4 신설)

- 1)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2)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 3)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 1) 계약상대자의 계약 의무불이행 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 2)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하고자 함
-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
- 2)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1.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방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의 실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관서의 업무 특성, 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영이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특례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범특례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시범특례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의 주요 목적 및 내용
2.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당해 시범특례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시범특례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성과평가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 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계약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계약 시범특례 지원 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연구

2. 각 중앙관서의 시범특례사업 계획 수립 컨설팅

3. 시범특례사업 성과평가

4.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그 밖에 시범특례사업의 운영과 국가계약 시범특례 지원 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65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을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조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 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 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과 제한사항등) ①-----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11. ----- ----- ----- -----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u>지방중소기업</u> 특별지원지 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 한다)한 자	가. ----- ----- <u>중소기업</u> -----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43조의4(국가계약 시범특례사 업의 실시) ① 각 중앙관서의</u>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관서의 업무 특성, 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영이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특례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범특례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시범특례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의 주요 목적 및 내용

2.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당해 시범특례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의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
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
서의 시범특례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성과평가 및 「조달사
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
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
령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국가계약과 관련된 전문기
관 또는 단체를 국가계약 시범
특례 지원 센터로 지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 ⑤ (생략)
<신설>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연구

2. 각 중앙관서의 시범특례사업 계획 수립 컨설팅

3. 시범특례사업 성과평가

4.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그 밖에 시범특례사업의 운영과 국가계약 시범특례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

<u>교통부·조달청</u>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 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 원 각 1명을 말한다. ②·③ (생략)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